무배당 AIA Vitality 정기특약
약관

◈ 목 차 ◈

◈ 가입자 유의 사항 ◈ 4

◈ 주요내용 요약서 ◈ 6

무배당 AIA VITALITY 정기특약 약관 8

제1관 보험금의 지급 8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8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8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9
제4조【보험금의 청구】 9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10
제6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1
제7조【보험수익자의 지정】 11

제2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1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 11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2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2

제10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12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13
제12조【특약의 무효】 13
제13조【특약 내용의 변경 등】 13
제14조【특약의 보험기간】 14

제4관 보험료의 납입 14

제15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14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15

제1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15
제16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15
제17조【해지환급금】..... 15
제18조【배당금의 지급】..... 16

제6관 기타사항 16

제1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6
제20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16

제7관 바이탈리티(VITALITY)에 관한 사항 16

제21조【바이탈리티(VITALITY) 관련 용어 정의】..... 16
제22조【바이탈리티 멤버십 회원 자격 부여 및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의 피보험자 등】..... 17
제23조【회원의 의무】..... 17
제24조【회원 정보 변경】..... 18
제25조【회원 탈퇴 및 회원 자격 상실 등】..... 18
제26조【바이탈리티 등급 및 포인트】..... 18
제27조【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 기준 및 방법 등의 변경】..... 20
제28조【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 20
제29조【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의 귀속 및 이용제한】..... 22
제30조【바이탈리티에 관한 기타사항】..... 22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23
<별표2> 재 해 분 류 표 24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26

◈ 가입자 유의 사항 ◈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가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회원 자격 상실 확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바이탈리티 등급 및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 피보험자에 대한 바이탈리티1.1 서비스 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사정 등으로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바이탈리티1.1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 회원이 수행한 포인트 적립 관련 활동이 회원 본인의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약관에서 정한 각 기간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월계약해당일(이하 "할인액 발생일"이라 합니다)에 **할인액을** 계산하며, 보험료 할인의 적용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과 '보험기간' 중 작은 기간으로 합니다. 또한 계산된 할인액은 이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선택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환급되거나 주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가 초과하여, 더 이상 선택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4. 청약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취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의 소멸

이 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소멸사유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바이탈리티 등급은 '브론즈(Bronze)', '실버(Silver)', '골드(Gold)', '플래티넘(Platinum)'의 4가지로 구분되며, 동일 순서로 최하위 등급('브론즈(Bronze)')에서 최상위 등급('플래티넘(Platinum)')으로 합니다.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은 직전 보험연도에 적용된 보험료 할인율에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료 할인 등급"에 따른 가감할인율을 반영하여 산출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월계약해당일(이하 "할인액 발생일"이라고 합니다)에 할인액을 계산하며, 보험료 할인의 적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과 '보험기간' 중 작은 기간으로 합니다. 또한 계산된 할인액은 이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선택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환급되거나 주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가 초과하여, 더 이상 선택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1보험연도의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은 바이탈리티 등급에 관계없이 0.1%이며, 이 상품의 피보험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입한 일시납 보험료를 기준으로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ㄱ. 청약일에 바이탈리티1.1 회원인 경우

ㄴ. 계약일 전에 바이탈리티1.1 회원인 경우

ㄷ. 계약일부터 1년 이내 바이탈리티1.1 회원이 된 경우 (다만, 이 경우는 바이탈리티1.1 회원이 된 이후 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의 적용기간 이내에서 이미 납입한 일시납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무배당 AIA Vitality 정기특약 약관

제1관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0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사망”에는 특약의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은 연명치료 시행의 사유로 하며,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재해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하 "재해"라 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6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이 특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제2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신합니다.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특약의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특약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특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이외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ia.co.kr)의 공시실 → 적용이율 →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특약 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의 변경 내용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 이 특약도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
1)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알리기 이전: 변경 전 보험수익자 2)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알린 이후: 변경 후 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액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④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주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할 때 이 특약도 계약자를 변경하여 드리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4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이 특약을 가입할 때 회사가 정한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험료의 납입 및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제12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이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산출 기준 및 방법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16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18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무배당보험
무배당보험은 계약자에게 따로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으로,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1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특약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20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7관 바이탈리티(Vitality)에 관한 사항

제7관(바이탈리티(Vitality)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이라 합니다.

제21조【바이탈리티(Vitality) 관련 용어 정의】

①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란 회원들의 건강관리노력 및 생활습관개선을 지원하는 건강 및 웰니스 프로그램입니다.
② “바이탈리티 어플리케이션”(이하 “바이탈리티 앱” 이라 합니다)이란 회원 가입, 바이탈리티 등급 및 포인트 확인 등 회원이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능을 담고 있는 휴대폰 어

플리케이션, 인터넷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③ “바이탈리티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합니다)란 회원이 건강 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적립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④ “바이탈리티 연도”란 기준일(회원 자격이 부여된 월일)로부터 기산한 1년마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2일에 회원 자격이 부여된 경우 기준일은 7월 2일입니다. 다만, 기준일이 2월 29일인 경우에는 다음 바이탈리티 연도부터 기준일을 3월 1일로 합니다.

제22조【바이탈리티 멤버십 회원 자격 부여 및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의 피보험자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바이탈리티 멤버십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자격을 부여합니다.

1. 만 18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한민국 거주 자격을 보유한 자
2.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인증을 완료한 자
3.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필수 동의 사항에 동의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를 모두 충족하고, 회원 가입 신청 후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

②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의 피보험자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회원으로서,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의하는 바이탈리티1.1 회원(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바이탈리티1.1” 서비스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명 변경시 변경된 서비스명을 따릅니다)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에 대한 바이탈리티 1.1 서비스 기간은「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1년 마다 갱신되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에 대한 바이탈리티 1.1 서비스 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는 바이탈리티 1.1 회원이 아니게 됩니다.

제23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회원 가입 신청 또는 회원 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또는 타인의 정보 도용
2. 회사가 바이탈리티 앱에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삭제 등 훼손 행위
3.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제3자의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 손상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및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바이탈리티 앱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6. 회원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7. 포인트 적립 관련 사기 또는 위법행위
8.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9.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

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10.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② 회원은 회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당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24조【회원 정보 변경】

회원은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직접 회원 정보를 변경하거나 회사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변경 방법은 바이탈리티 앱,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5조【회원 탈퇴 및 회원 자격 상실 등】

①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회원은 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탈리티 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당해 회원에게 회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합니다.

1. 다른 회원의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2. 일정 기간 동안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의해 회원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보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3. 제22조(바이탈리티 멤버십 회원 자격 부여 및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의 피보험자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3조(회원의 의무)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회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원의 소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회원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의견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 자격 상실이 확정됩니다. 회사는 회원 자격 상실이 확정된 회원에게 바이탈리티 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 자격 상실 확정을 통보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바이탈리티 등급 및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1.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회원 자격 상실 확정을 통보하는 경우

⑤ 피보험자가 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바이탈리티1.1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26조【바이탈리티 등급 및 포인트】

① 바이탈리티 등급은 '브론즈(Bronze)', '실버(Silver)', '골드(Gold)', '플래티넘(Platinum)'의 4가지로 구분되며, 동일 순서로 최하위 등급('브론즈(Bronze)')에서 최상위 등급('플래티넘(Platinum)')으로 합니다.

② 포인트는 환금성이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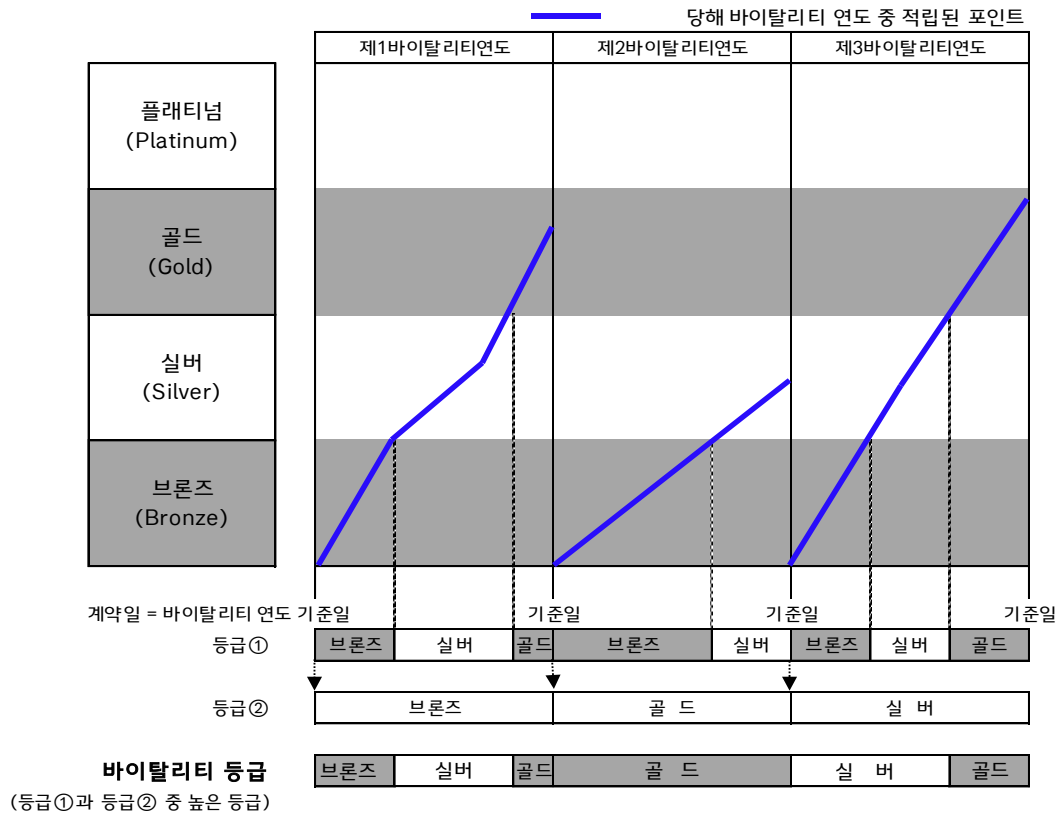
③ 회원은 바이탈리티 앱, 전화 등을 통해 현재의 바이탈리티 등급 및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매 바이탈리티 연도 기준일에 직전 바이탈리티 연도에 적립한 포인트는 소멸되고, 회원은 0포인트부터 다시 포인트 적립을 시작합니다.

⑤ 회원 가입시점 바이탈리티 등급은 '브론즈(Bronze)'입니다. 바이탈리티 등급은 [당해 바이탈리티 연도 중 적립된 포인트에 따른 등급]과 [직전 바이탈리티 연도 마지막 날까지 적립된 포인트에 따른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으로 합니다.

바이탈리티 등급 예시

※ 가정: 계약일과 바이탈리티 연도 기준일이 동일한 경우



등급① : [당해 바이탈리티 연도 중 적립된 포인트에 따른 등급]

등급② : [직전 바이탈리티 연도 마지막 날까지 적립된 포인트에 따른 등급]
다만, 직전 바이탈리티 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등급②를 브론즈로 한다.

⑥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및 포인트 적립 기준은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 기준 및 방법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안내합니다.

제27조【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 기준 및 방법 등의 변경】

① 회사는 바이탈리티 제휴사(이하 "제휴사"라 합니다)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 기준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 기준 및 방법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회원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 기준 및 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안내합니다.

1. 회사는 회원에게 변경 사유, 적용일자, 변경될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2. 제1호에 따른 안내는 전자적 방법(전자우편, 바이탈리티 앱 등),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 기준 및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안내합니다.

제28조【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

① 보험료 할인에 적용되는 바이탈리티 등급(이하 "보험료 할인 등급"이라 합니다)은 매 보험연도 시작일의 45일 전일의 회원인 피보험자의 바이탈리티 등급을 기준으로 확정하여 이후 도래하는 보험연도 1년 동안 적용합니다.

보험연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0 년 10 월 15 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10 월 15 일부터 차년도 10 월 14 일까지 1 년입니다.

② 회사는 이 상품의 영업보험료(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이미 납입한 일시납 영업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각 기간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월계약해당일(이하 "할인액 발생일"이라고 합니다)에 할인액을 계산하며, 보험료 할인의 적용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과 '보험기간' 중 작은 기간으로 합니다. 또한 계산된 할인액은 이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선택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환급되거나 주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가 초과하여, 더 이상 선택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1. 제1보험연도: 0.1%

   이 상품의 피보험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입하는 영업보험료(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이미 납입한 일시납 영업보험료를 말합니다.)에 적용합니다.

   ㄱ. 청약일에 바이탈리티 1.1 회원인 경우

   ㄴ. 계약일 전에 바이탈리티 1.1 회원인 경우

   ㄷ. 계약일부터 1 년 이내 바이탈리티 1.1 회원이 된 경우 (다만, 이 경우는 바이탈리티 1.1 회원이 된 이후 제 2 항에서 정하는 보험료 할인의 적용기간 이내에서 이미 납입한 일시납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2. 제2보험연도 이후 매 보험연도: 직전 보험연도에 적용된 보험료 할인율에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료 할인 등급"에 따른 가감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할인율(이하 "누적할인율"이라 합니다). 단, 누적할인율이 0.2%를 초과할 경우 0.2%로 하고, 0%미만인 경우 0%로 합니다.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의 보험료 할인 적용 예시

계약일	계약일 후 바이탈리티 1.1 회원이 된 시점	제 1 보험년도 할인율 적용	제 2 보험년도 이후 할인율 적용
2021.09.01	2022.04.01	O	O
	2022.09.01	X	O

[누적할인율 한도 및 가감할인율]

누적할인율 한도	최대	0.2%
	최소	0%
"보험료 할인등급" 에 따른 가감할인율	브론즈(Bronze)	0.02% 차감
	실버(Silver)	0.01% 차감
	골드(Gold)	0.01% 가산
	플래티넘(Platinum)	0.02% 가산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 예시

※ 가정: 피보험자가 바이탈리티 1.1 회원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우

	제 1 보험연도	제 2 보험연도	제 3 보험연도	제 4 보험연도	제 5 보험연도
보험연도	45 일	45 일	45 일	45 일	45 일
보험료 할인 등급	골드	플래티넘	브론즈	브론즈	실버
①가감할인율		+0.01%	+0.02%	-0.02%	-0.02%
②누적할인율	0.1%	0.11%	0.13%	0.11%	0.09%
③일시납 보험료	1,000 만				
④매월 할인액	1(=1,000X0.1%)	1.1 (=1,000X0.11%)	1.3(=1,000X0.13%)	1.1(=1,000X0.11%)	0.9(=1,000X0.09%)

당해 보험연도의 누적할인율(②) = 직전 보험연도의 누적할인율 + 당해 보험연도의 가감할인율(①)
매월 할인액(④) = 일시납 보험료(③) X 당해 보험연도의 누적할인율(②)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할인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할인액 발생일" 후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 할인 등급”, “가감할인율” 및 “누적할인율” 등 보험료 할인의 제공 여부와 보험료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매 보험연도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전자적 방법(전자우편, 바이탈리티 앱 등), 서면 등을 통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안내합니다. (다만, 제1보험연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은 계약시점에 안내합니다)

⑤ 제13조(특약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변경된 보험료를 계산한 후,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⑥ 회원이 수행한 포인트 적립 관련 활동이 회원 본인의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회사는 바이탈리티1.1 회원에게 적용되는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저작물의 저작권, 기타 회사가 등록·출원·생성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이 바이탈리티 앱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0조【바이탈리티에 관한 기타사항】

①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에서 권장하는 과제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된 맞춤 과제가 아니므로, 회원은 과제 수행 전 본인의 건강 상태 및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건강 이상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므로 회사는 이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에 게시한 정보나 기능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 기준 및 방법” 자세한 사항은 사업방법서 별지 “[(별첨1)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 기준 및 방법]”을 따릅니다. 다만,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 기준 및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인 피보험자의 동의 등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사망보험금 (약관 제1조)

지 급 사 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 급 금 액	1,000만원

<별표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한 제 1 급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1. ( ) 안은 제 8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 호, 2021.1.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1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
해지환급금 (제17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